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97

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 : 김태호 · 이주환 · 김은혜

김희국・金炳旭・윤두현

지성호 · 서일준 · 엄태영

이양수・윤한홍・윤재갑

김승수 · 박대수 · 조수진

김형동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의무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,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등 동이나 읍이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있음.

그러나 읍 지역의 경우라도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면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2만 명 미만 의 읍 지역 역시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인구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의 경우에도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,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동이나 읍(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)이 아닌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동이나 읍(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 인 경우만 해당된다)이 아닌 지역
- 2.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읍 지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적용 제외) ① (생 략) | 제3조(적용 제외) ① (현행과 같 |
| | 음) |
|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| ② |
|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| |
|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 | |
| 른 지구단위계획구역(이하 "지 | |
| 구단위계획구역"이라 한다) 외 | |
| 의 지역으로서 <u>동이나 읍(동이</u> | <u>다음 각 호의</u> |
| 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|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|
|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| |
| <u>해당된다)이 아닌</u> 지역은 제44 | |
| 조부터 제47조까지, 제51조 및 | |
|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| |
| <u><신 설></u> | 1. 동이나 읍(동이나 읍에 속하 |
| | 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 |
| | 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) |
| | <u>이 아닌 지역</u> |
| <u><신 설></u> | 2.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읍 지 |
| | <u>역</u>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